

# 조세 재정

2017. 11. 24(통권 제60호)

# BRIEF

## 최근 OECD 회원국의 조세동향

— 『Tax Policy Reforms 2017』을 중심으로 —

김빛마로 부연구위원(044-414-2339)



**BRIEF**

---

## 최근 OECD 회원국의 조세동향

- 「Tax Policy Reforms 2017」을 중심으로 -

김빛마로 부연구위원 (044-414-2339)

---

I. 서론	02
II. 거시경제적 여건	02
III. 세수 및 세수구성비 추이	06
IV. 주요국의 2016년 세제개편 내용	10



## I 서론

- OECD에서는 지난 9월 13일 OECD 회원국 등 37개국의 주요 세제개편 내용과 조세정책 동향을 소개 및 분석한 『Tax Policy Reforms 2017』 보고서를 출간함<sup>1)</sup>
  - 동 보고서에서는 먼저 분석대상 국가가 직면한 경제여건에 대해 살펴보고, 세수입(tax revenue) 규모 및 구성비 등의 최근추이를 소개하고 있음
  - 또한 2016년에 공표, 입법, 시행된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세목별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Tax Policy Reforms 2017』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해외 주요국의 전반적인 조세개편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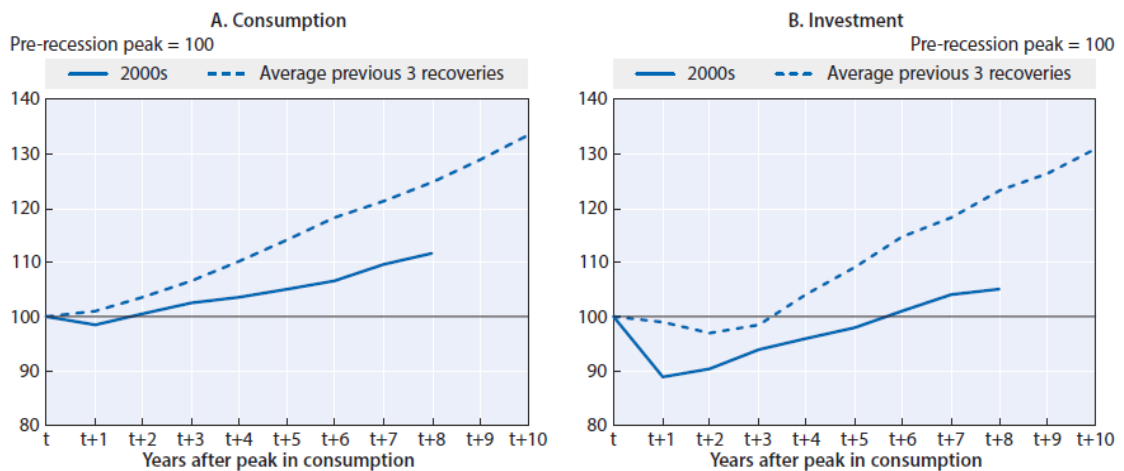
## II 거시경제적 여건

- 주요국의 조세동향 및 정책변화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주요국의 거시경제적 여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조세정책의 변화는 경제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짐
  - 세수입 등 조세 관련 주요 통계는 경제적 상황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 본 보고서에서는 OECD 회원국의 경제성장, 노동시장 여건, 생산성, 공공부채, 불평등도(inequality)에 대해 소개함
- (경제성장) 최근 5년간의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3% 수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성장이 둔화되었음
  - 금융위기 이전 20년간의 경제성장률은 4% 내외임

1)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tax/tax-policy-reforms-2017-9789264279919-en.htm>, 접속일: 2017.10.10.)

- 특히 OECD 회원국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비와 투자의 회복속도는 과거 경제위기의 경우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1] 참조)
  - 1973년, 1980년, 1990년의 경제위기 이후 소비 및 투자추이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비해 회복 속도가 빠르고 증가치도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II-1] OECD 회원국의 경제위기 이후 소비와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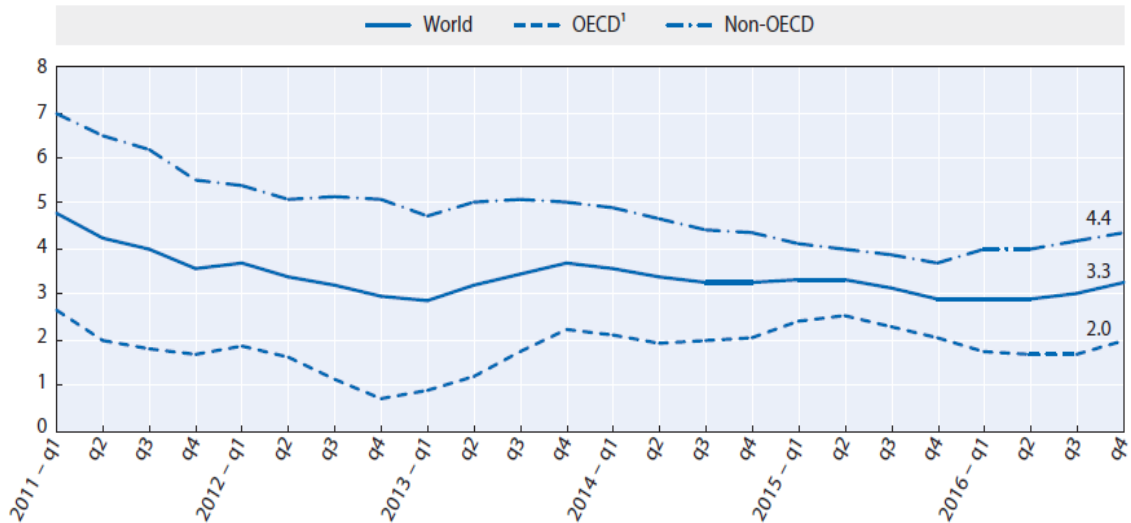


주: 점선은 1973년 4분기, 1980년 1분기, 1990년 3분기 이후의 소비 및 투자 추이를, 실선은 2008년 1분기 이후의 소비 및 투자 추이를 나타냄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7*, p. 15

- 다만, 2016년 말에 들어서면서 경기가 다소나마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임
  - 2016년 3분기와 4분기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에서 회복됨 ([그림 II-2] 참조)
  -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소비와 투자 수준도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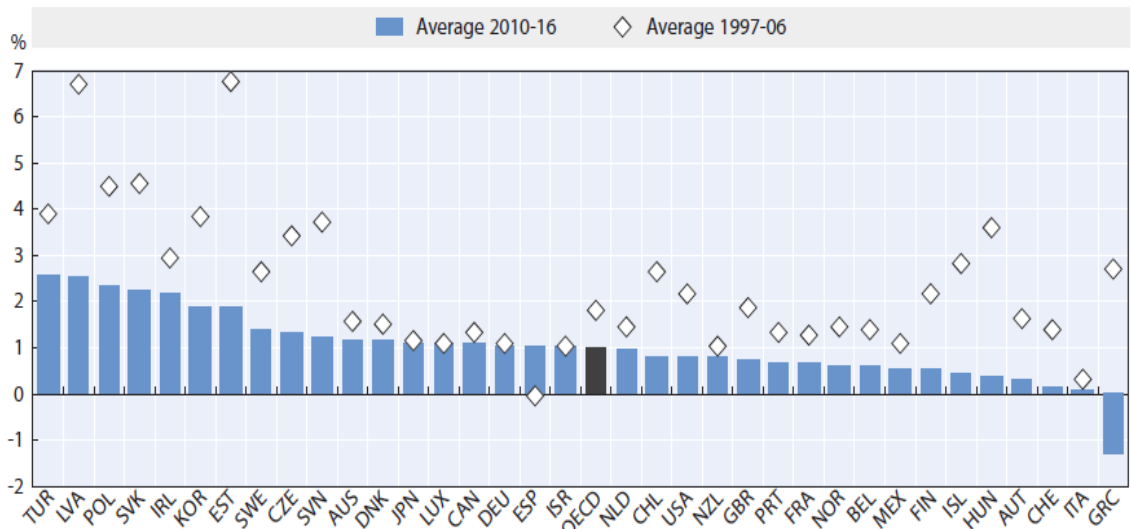
[그림 II-2] 분기별 실질 경제성장률 (2011~2016)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7, p. 14

- (노동시장 여건) 실업률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대체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실질 노동소득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음
  - 2017년 1분기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5.8%로 2009년 말의 8.5%보다 개선되었음
  - 다만 그리스, 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의 경우 여전히 20% 내외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
  - 실질 노동소득 증가율은 2016년 들어 하락하는 추세이며, 특히 미국의 경우 2016년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 (생산성)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그림 II-3] 참조)
  -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크게 하락한 투자수준의 회복속도가 더딘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그림 II-3] OECD 회원국의 경제위기 전후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



주: 흰색 마름모 표시는 금융위기 이전인 1997~2006년의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파란색 막대 표시는 금융위기 이후인 2010~2016년의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7*, p. 19

- (공공부채) 공공부채 수준은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안정화되는 추세이며, 재정 적자 수준은 하락함
  - 2016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정부 총부채는 113% 수준으로 2010년의 97% 비해 상승하였으나 그 속도는 최근 둔화되는 추세임
  - 2016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수준은 3%로 2009년의 8.4%에 비해 크게 하락함
  
- (불평등도)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본 소득 불평등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조사대상 33개국 중 금융위기 이후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악화된 국가는 20개 국가였으며, OECD 평균 지니계수는 2010년 대비 0.7% 증가함
  - 조세와 이전지출 등의 효과가 반영된 가처분소득 기준 OECD 평균 지니계수는 0.318로 2010년에 비해 약 1% 상승해 소득 불평등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Ⅲ 세수 및 세수구성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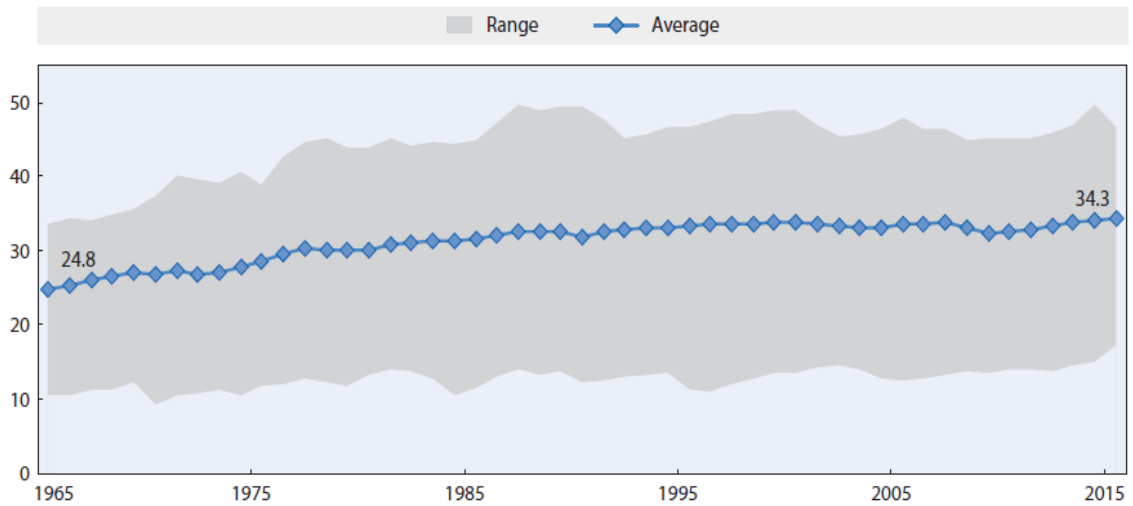
- ● 다음으로는 OECD 회원국 등 37개국의 세수입 규모 및 세수입 구성비의 추이에 대해 소개함
  - 세수입 규모는 GDP 대비 총세수입<sup>2)</sup>의 비중<sup>3)</sup>을 통해 측정하며, 전체 세수입에서 주요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도 살펴봄
- ● OECD 회원국의 세수입 규모는 최근 5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Ⅲ-1] 참조)
  -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2.4%까지 하락했던 GDP 대비 세수입 비중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기준 34.3%까지 상승함
    -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화(fiscal consolidation)를 위한 조치에 의한 결과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수 증가와 함께 재정지출 효율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재정적자 규모가 감소함
  - 2015년 수치는 OECD에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임
- ● 또한 GDP 대비 세수입 비중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Ⅲ-2] 참조)
  - 덴마크(46.6%), 프랑스(45.5%)가 GDP 대비 세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였으며, 멕시코(17.4%)와 칠레(20.7%)는 가장 낮은 세수입 비중을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25.3%로 조사대상 국가 37개국 중 34위에 해당하여, 세수입 비중이 낮은 국가로 분류됨
- ● 최근의 세수입 규모 흐름을 국가별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GDP 대비 세수입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를 포함한 25개국에서 2015년의 GDP 대비 세수입 비중이 2014년 보다 증가하였음

2) 총세수입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개념임

3) 이 지표는 "국민부담률"로 불리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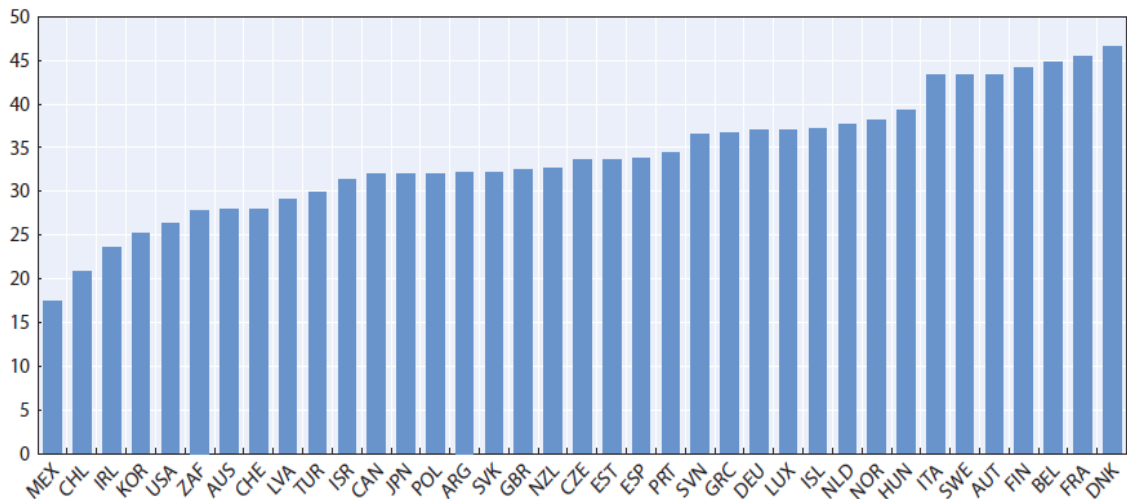
- 세수입과 정부 재정지출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III-1] OECD 평균 GDP 대비 세수입 비중 추이



주: 2015년은 자료가 가용한 32개국의 평균임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7*, p.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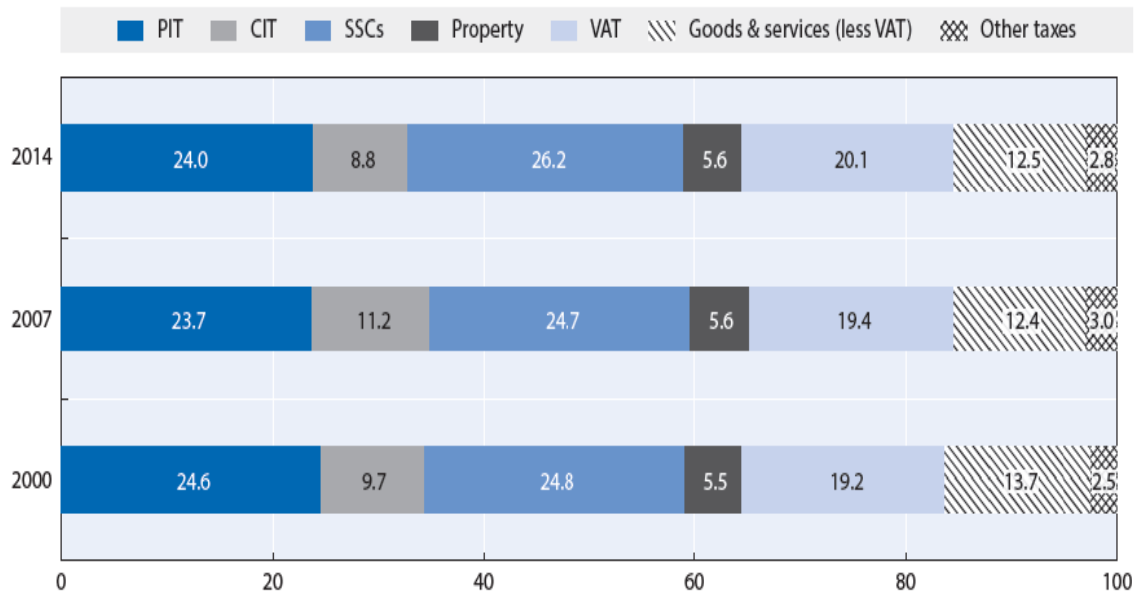
[그림 III-2] 국가별 GDP 대비 세수입 비중 (2015년)



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폴란드, 호주는 2014년 자료임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7*, p. 26

- ● OECD 회원국의 세수입 구성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보장기여금과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증가하고, 법인세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3] 참조)
  - 전체 세수입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과 2007년 각각 24.7%와 24.8%였으나, 2014년에는 26.2%까지 상승함
  - 반면 법인세의 경우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는 11.2%까지 상승하였다가 2014년에는 8.8%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부가가치세 비중은 2000년 대비 0.9%p 상승한 20.1%로 조사됨
  
- 즉, OECD 회원국의 전체 세수입 중 노동과 소비에 대한 세금의 비중은 확대되고 기업에 대한 세금 비중은 축소되었음
  - 노동에 대한 세금 중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상승한 반면, 법인세의 비중은 하락함
  - 또한 부가가치세와 기타 소비세의 합이 전체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음

[그림 III-3] 세목별 세수입 비중 추이 (OECD 평균)



주: 왼쪽부터 개인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소비세, 기타세금 순임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7*, p. 31

- 이러한 결과는 경제 상황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나타났으며, 각국의 조세정책 변화도 주요인 중 하나로 추정됨
  - 실제로 2015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은 19.2%로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
  - 2008년 기준 4개국이었던 부가가치세 기본세율 22% 이상 국가의 수도 2015년에는 10개국으로 증가함
  - 다만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것은 최근의 경제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음
    - 법인세수의 경우 다른 세목보다 경기변동이나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IV 주요국의 2016년 세제개편 내용

- ● 본 장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주요국에서 공표, 입법, 시행된 세제개편 내용을 세목 별로 소개함
  - 조사대상 국가는 OECD 회원국 35개국과 아르헨티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7개국임
  - 세목은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소비세, 환경세, 재산세 등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봄

### 1.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관련 주요 세제개편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저소득층과 중간소득계층에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인하하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인상함
  - 많은 국가들이 개인소득세의 과세기반(tax base)을 축소함
  - 다수의 국가가 사회보장기여금의 관련 세제개편을 시행 또는 예고했지만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음
- ● 조사대상 37개국 중 9개국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15개국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에 적용되는 세율 인하를 시행 또는 시행 예고함 (〈표 IV-1〉 참조)
  - 이러한 조치는 전체적인 개인소득세로부터의 세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됨
  -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 계층의 개인소득세율 인하는 이들 계층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경우가 많았음
  - 오스트리아, 캐나다,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등 4개국의 경우 최고세율 인상과 기타 세율 인하가 함께 이루어지며 개인소득세의 누진구조를 강화함

〈표 IV-1〉 주요국의 개인소득세율 세제개편

시행시기	세율인상		세율인하	
	2016년	2017년 이후	2016년	2017년 이후
최고세율	오스트리아, 캐나다,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이스라엘, <b>한국</b> ,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헝가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기타구간 세율	그리스, 노르웨이	호주,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7*, p. 44. Table. 3.2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 ● 공제제도 등 개인소득세 관련 기타제도는 과세기반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국가가 많았음 (〈표 IV-2〉 참조)
  - 개인소득세의 기본 공제, 세액공제 등을 확대한 국가가 다수 관측됨
  - 많은 국가에서 자녀 및 부양가족 관련 정책변화가 있었으며, 이들 중 스페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자녀 및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짐
  - 또한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함

〈표 IV-2〉 주요국의 개인소득세 과세기반 관련 세제개편

시행시기	과세기반 확대		과세기반 축소	
	2016년	2017년 이후	2016년	2017년 이후
인적공제, 세액공제, 세율구간	호주, 캐나다, 핀란드, 영국, 그리스,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룩셈부르크, 스웨덴	아르헨티나, 벨기에,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아르헨티나, 독일, 스페인, 벨기에, 핀란드,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노르웨이,

시행시기	과세기반 확대		과세기반 축소	
	2016년	2017년 이후	2016년	2017년 이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특정 저소득층 및 근로장려세제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자녀 및 부양가족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호주, (체코)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인 및 장애인			네덜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기타경비 및 공제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페인, 그리스, 스웨덴	호주, 캐나다, (체코), 스페인, 영국, 룩셈부르크, 스웨덴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스웨덴, 터키	벨기에, 스페인,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주: 괄호 안의 국가는 세제개편 내용 발표만을 한 국가임.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7*, p. 46. Table. 3.3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 ● 사회보장기여금 효율, 사회보장기여금 과세기반 관련 세제개편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세제개편의 방향성도 일관된 흐름은 관측되지 않음
  - 사회보장기여금 효율의 경우 인하하는 국가가 다수였으나, 기타 정책변화는 오히려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국가가 많았음
  - 당분간은 OECD 회원국의 전체 세수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2. 법인세

- ● 법인세 관련 주요 세제개편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최근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가 지속됨

- 기업의 투자, R&D 등을 독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함
  -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제도를 축소하고, 국제적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시행됨
- 법인세율을 변경한 국가 중 대다수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최근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가 지속됨 (〈표 IV-3〉 참조)
    - 총 8개국이 2017년부터 인하된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평균 2.7%p 세율을 인하함
    - 또한 중소기업 적용세율을 인소한 국가도 다수 존재함
    - 법인세율 인하의 흐름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지속된 현상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2.2%에서 2016년 24.7%로 하락함
    - 실효세율을 통해 살펴보아도 법인세 부담은 완화되는 추세임 (〈참고〉 참조)

〈표 IV-3〉 주요국의 법인세율 세제개편

시행시기:	세율인상		세율인하	
	2016년	2017년 이후	2016년	2017년 이후
표준세율	칠레	슬로베니아	스페인, 이스라엘, 일본, 노르웨이	(호주), (스페인), (프랑스), 영국,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중소기업 세율			(호주) <sup>1)</sup> , 캐나다	(호주), 프랑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주: 괄호 안의 국가는 세제개편 내용 발표만을 한 국가임

1) 호주의 중소기업 법인세율은 아직 입법되지 않았으며, 입법될 경우 2016년 7월 1일 이후 법인소득에 소급해서 적용될 예정임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7*, p. 56. Table. 3.8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 몇몇 국가에서 기업의 투자 및 R&D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이 확대된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결손금 이월공제제도를 축소하며 과세기반을 확대하였으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정이 강화됨 (〈표 IV-4〉 참조)

-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은 일반적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였고, 이탈리아, 터키, 오스트리아 등은 R&D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도입 또는 강화함
- 스페인, 일본, 한국, 라트비아 등은 결손금 이월공제를 축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많은 국가들이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 또는 강화하였음
  - 이들 중 다수는 BEPS 프로젝트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임

〈표 IV-4〉 주요국의 법인세 과세기반 관련 세제개편

시행시기	과세기반 확대		과세기반 축소	
	2016년	2017년 이후	2016년	2017년 이후
감가상각총당금 공제	일본	노르웨이		이탈리아
결손금 이월공제	스페인, 일본	스페인, 일본,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영국)		
조세회피 방지규정	호주, 아일랜드,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일반 투자 지원			터키	프랑스, 룩셈부르크
R&D 조세지원			오스트리아, 터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환경관련 조세지원				헝가리, 멕시코, (영국)
중소기업 조세지원				폴란드, 포르투갈

주: 괄호 안의 국가는 세제개편 내용 발표만을 한 국가임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7*, p. 59. Table. 3.9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 〈참고〉 주요국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기준 실효세율은 (총납부세액/과세표준)이며, 국세를 기준으로 산출함
  - 각종 공제가 적용된 과세표준 대비 납부세액이므로 국가별 공제의 차이는 실효세율에 반영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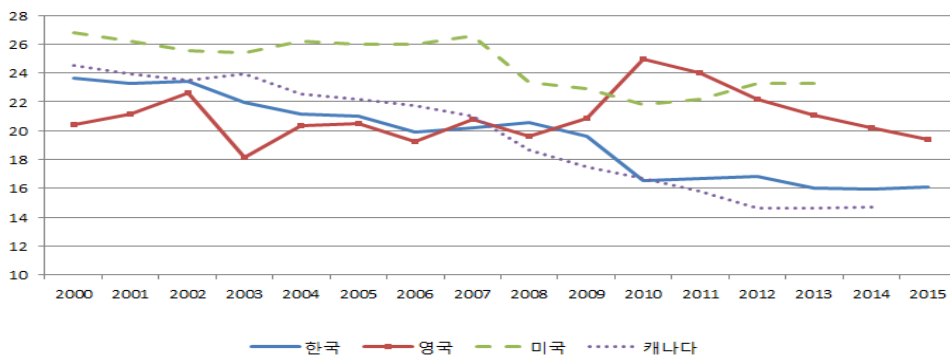
주요국의 과세표준 기준 국세분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2000~2015년)

(단위: %)

연도	한국	영국	미국	캐나다
2000	23.66	20.44	26.83	24.55
2001	23.26	21.13	26.24	23.91
2002	23.43	22.63	25.58	23.50
2003	21.97	18.12	25.38	23.97
2004	21.17	20.34	26.18	22.51
2005	21.04	20.47	25.98	22.18
2006	19.94	19.21	25.98	21.76
2007	20.22	20.77	26.55	20.99
2008	20.55	19.58	23.36	18.65
2009	19.59	20.84	22.91	17.50
2010	16.56	24.95	21.81	16.70
2011	16.65	24.04	22.21	15.78
2012	16.80	22.21	23.30	14.63
2013	15.99	21.08	23.31	14.59
2014	15.98	20.18	-	14.71 <sup>1)</sup>
2015	16.08	19.39	-	-

주 : 1) 연방법인세액과 지방법인세액 합산 시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4년 기준 약 24%임  
 자료 : 각국 국세청(한국 : <http://www.nts.go.kr/>, 미국 : <https://www.irs.gov/>,  
 영국 :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revenue-customs>,  
 캐나다 :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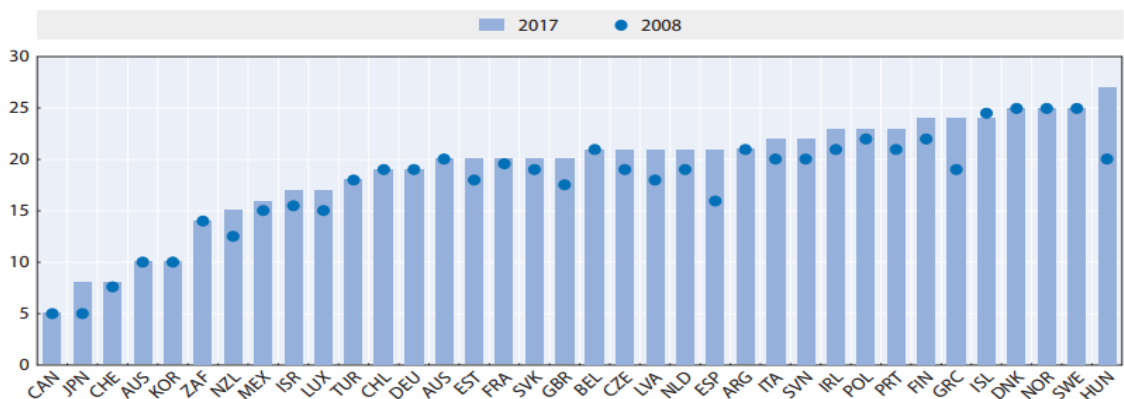
(단위 : %)



### 3. 부가가치세 및 기타 소비세

- ● 부가가치세 및 기타 소비세 관련 주요 세제개편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최근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인상 움직임이 완화되면서 세율을 변경한 국가는 거의 없었음
  - 반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적용은 확대됨
  - 많은 국가들이 주류, 담배, 탄산음료 등에 대한 소비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롭게 도입함
- ● 2016년에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변경을 시행한 국가는 그리스가 유일했으며, 일본의 경우 소비세율을 인상할 예정이지만 시행시기를 연기함
  - 그리스는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23%에서 24%로 인상함
  - 일본은 2017년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시행시기를 2019년 10월로 연기함
- ● 부가가치세율 표준세율을 변경한 국가가 많지 않은 것은 많은 국가들이 이미 세율인상을 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됨 ([그림 IV-1 참조])
  - 2008년 17.6%였던 OECD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15년 17.6%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임
  - 실제로 2008년 이후 21개국에 최소 한 번 이상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한 바 있음

[그림 IV-1] 국가별 표준 부가가치세율 비교 (2008년 vs. 2017년)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7, p. 67

- 많은 국가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경감세율을 인하함 (<표 IV-5> 참조)
  - 이러한 조치는 특정 산업 또는 사회적 가치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됨
    - 스웨덴에서는 자전거, 신발, 가죽의류 등의 수리비용에 대해 새롭게 경감세율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임
    - 헝가리, 포르투갈, 체코의 경우 음식점 서비스에 대해서, 체코는 최근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신문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문 및 잡지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을 새롭게 도입함

<표 IV-5>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관련 세제개편

	일반	식품류	호텔/음식점	신문/ 전자도서	문화	기타
세율 인상 또는 적용범위 축소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sup>1)</sup>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세율 인하 또는 적용범위 확대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터키	체코, 헝가리, 포르투갈	체코, 칠레, 노르웨이		헝가리, 스웨덴, 터키

주: 1) 스웨덴에서는 영화표에 대한 세율인상안이 2015년 입법되었으나, 2017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7*, p. 69. Table. 3.11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 많은 국가들이 세수확보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주류 및 담배에 대한 소비세부담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 또는 예고함 (<표 IV-6> 참조)
  - 16개국이 2016년에 주류/담배에 대한 강화된 소비세율을 적용하였으며, 11개국은 2017년 이후 시행을 예고함
  - 특히 담배에 대한 과세강화 조치가 많았음
    - 이는 담배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담배시장이 소수의 기업에 의한 독과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또한 담배세 인상이 흡연율에 유의미한 효과를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기도 함

〈표 IV-6〉 주요국의 주류 및 담배에 대한 소비세율 세제개편

시행시기	세율 인상 또는 과세기반 확대	
	2016년	2017년 이후
주류	스페인, 에스토니아, 그리스, 네덜란드,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이스라엘, 포르투갈, 스웨덴
담배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체코,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영국,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스페인,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7*, p. 73. Table. 3.13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 ● 추가적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탄산음료 등에 대한 소비세율을 인상함

- 탄산음료 등 설탕이 함유된 재화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세 부과 문제는 최근 급격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2016년부터 설탕 등이 들어간 음료수에 대한 소비세율을 인상하였으며 포르투갈, 영국 등은 2017년 이후 이들 제품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예정임

#### 4. 환경세

● ● 환경세의 주요 세제개편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사용 관련 세금을 중심으로 세법개정을 진행함
- 일부 국가는 자동차 및 교통 관련 세금을 변경하였으며, 기타 환경 관련 세금을 변경한 국가는 거의 없었음

● ● 에너지 사용 관련 세제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세율을 인상하거나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주를 이뤘으며 특히 교통 관련 연료에 대한 세금이 강화됨 (〈표 IV-7〉 참조)

- 대부분의 국가들이 교통 관련 연료사용에 대해 기타 연료사용 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조치는 이들 사이의 세부담 격차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됨

〈표 IV-7〉 주요국의 에너지사용 관련 세제개편

시행시기	세율 인상/과세기반 확대		세율 인하/과세기반 축소	
	2016년	2017년 이후	2016년	2017년 이후
특정 산업용 연료:				
전기 생산	한국	한국, 라트비아, (영국[탄])	그리스, 네덜란드	그리스
난방	핀란드[탄], 그리스, 네덜란드	핀란드, 핀란드[탄]	스웨덴	그리스
교통	호주[바], 스페인, 멕시코, 포르투갈, 스웨덴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탄], 멕시코, 포르투갈, 노르웨이[탄], (스페인)	스웨덴[바]	
일반 연료	스페인,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에스토니아)	영국	영국
탄소세		캐나다 <sup>1)</sup> , (영국)		
전기 소비	노르웨이, 스웨덴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sup>2)</sup>

주: 괄호안의 국가는 세제개편 내용 발표만을 한 국가임

1) 캐나다 알버타 주에 도입

2) 총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함

[바]: 바이오연료 관련 세금

[탄]: 연료의 탄소성분에 기반한 세금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7*, p. 77. Table. 3.15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 자동차 및 교통관련 세금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세부담은 강화하는 한편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됨 (〈표 IV-8〉 참조)
  - 자동차세 중 보유세에 대한 변화가 주를 이뤘으며 보유세를 강화한 국가가 다수로 조사됨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에 대한 세제지원의 연장이 결정되거나 새로 도입된 국가는 헝가리 등 5개국이었으며, 2016년 기준 총 19개국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중임

〈표 IV-8〉 주요국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관련 세제개편

시행시기	세율 인상/과세기반 확대		세율 인하/과세기반 축소	
	2016년	2017년 이후	2016년	2017년 이후
자동차세	핀란드 <sup>1)</sup> , 이스라엘,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라트비아 <sup>1)</sup> , 포르투갈	헝가리, 터키	라트비아 <sup>1)</sup> , 노르웨이 <sup>2)</sup>
등록세	그리스,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영국)	헝가리, 핀란드 <sup>1)</sup>	덴마크, 네덜란드 <sup>1)</sup>
대체연료 자동차 관련세금			덴마크, 헝가리, 터키	룩셈부르크, 스웨덴
법인차량		룩셈부르크	헝가리	네덜란드 <sup>1)</sup>
기타 (고급차, 폐기기준, 구입지원 등)	그리스	라트비아	그리스, 헝가리, 터키	호주

주: 괄호 안의 국가는 세제개편 내용 발표만을 한 국가임

1) 총 세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함

2) 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금은 강화되고, 자동차세는 인하됨 (〈표 IV-7〉 참조)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7*, p. 81. Table. 3.16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 5. 재산세

● ● 재산세의 경우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국가들이 많았음 (〈표 IV-9〉 참조)

- 일부 국가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였으며, 동산 및 부동산 거래세를 강화한 국가도 다수 관측됨
- 이스라엘과 영국의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일부 국가는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하거나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함
  - 핀란드는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은 공제한도를 확대함

〈표 IV-9〉 주요국의 재산세 세제개편

시행시기	세율 인상/과세기반 확대		세율 인하/과세기반 축소	
	2016년	2017년 이후	2016년	2017년 이후
상속·증여세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덴마크, 아일랜드	덴마크,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sup>2)</sup>
동산 및 부동산 거래세	오스트리아, 칠레,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벨기에, 프랑스		
부동산 보유세	핀란드	핀란드, 이스라엘, 포르투갈	이탈리아, 터키	
(순)자산에 대한 보유세	스페인 <sup>1)</sup> , 룩셈부르크	스페인 <sup>1)</sup> ,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노르웨이

주: 괄호 안의 국가는 세제개편 내용 발표만을 한 국가임

1) 스페인에서는 부유세 일몰이 연장됨

2) 네덜란드의 세제개편은 2015년 입법되었고 2017년부터 시행됨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7*, p. 84. Table. 3.18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 | 참고문헌 |

---

- OECD, *Tax Policy Reforms*, 2017.
- 각국 국세청 :
  - 한국 : <http://www.nts.go.kr/>
  - 미국 : <https://www.irs.gov/>
  - 영국 :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revenue-customs>
  - 캐나다 :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html>



**BRIEF**

---

## 최근 OECD 회원국의 조세동향

- 『Tax Policy Reforms 2017』을 중심으로 -

2017. 11. 24(통권 제60호)

---

- 발행인 : 박형수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전 화 : 044-414-2123
  - 팩 스 : 044-414-2129
  - 인쇄처 : (주)아미고디자인
-

